

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http://www.kma.org] / 전화(02)6350-6529 / 전송(02)792-5208
학술면허국 국장 장원현 [6564] 학술교육팀장 손용석 [6518] 담당 김준환 [6529] / E-mail:alexantel@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442-121호

시행일자 2025. 4. 3.

수 신 각 연수교육기관장

참 조

제 목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제2025-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1. 귀 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제43대 제1차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2025.3.20.)

나. 제43대 제2차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서면결의(2025.3.28.)

다. 제43대 제11차 상임이사회 의결(2025.4.2.)

3. 상기 근거로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 제 2025-1호로 안내 드리오니 동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 신청 및 진행 하시기를 부탁 드리오며, 동 지침 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 사항

1) 자(子)기관 인정 규정 변경

- 자(子)기관 : 학회 인준 또는 모기관의 정관 및 회칙에 정식 등록 되었거나 모(母)기관이 자(子)기관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 진료과를 말함.

2) 온라인 교육 기관 연간 평점 제한

- 온라인 교육은 기관당 연간 8평점까지 교육 가능(자(子)기관도 동일 적용)

3) 개정 지침 [첨부 : 제2025-1호 연수교육 지침 참조]

- 수강료는 회비납부 회원과 미납회원간의 합리적 수준에서 차등 가능(국가지원 교육의 경우 수강료 면제 가능)
- 2개 이상의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경우 강의실 별 교육내용이 상이하면 각 강의실의 교육내용을 모두 입력하여야 함.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업체에서 강사 초빙 시 한 업체 소속 강사가 전체 업체 소속 강사 중 50%를 넘지 않아야 함.

4) 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제한은 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붙임 : 제2025-1호 연수교육 지침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